

식약처,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등 8개현 모든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 수입금지
- 일본산 모든 식품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3.11.) 이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멍게, 가리비, 참돔 등) 및 15개현** 27개 농산물(벼싯류, 쌀, 고사리, 대두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붙임 참고). 이에 따라 수입규제 이전에 한국으로 수출되던 일본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 8개현 +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세습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2021년 1월부터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였습니다.

* 검출한계 1,800초(0.5~0.9 Bq/kg), 1만초(0.2~0.3 Bq/kg)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 (radsafe.mfds.go.kr)에서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식품 방사능 검사 정보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및 검사 절차 ▲해외 제조업체 주소 등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성옥 (043-719-2170)
		담당자	사무관	강성필 (043-719-2160)





< 수산물 : 8개현 모든 수산물(멍게, 가리비, 참돔 등) >

< 농산물 : 15개현 27개 품목(버섯, 쌀, 고사리, 대두 등) >

구분	지 역	수입금지 품목
1	후쿠시마현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 매실,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오가피, 고비, 고사리, 대두, 팥, 땅두릅 (독활)
2	지바현	엽채류, 엽경채류, 차, 버섯류, 죽순
3	도치기현	시금치, 카키나, 차, 버섯류, 두릅, 죽순, 청나래고사리,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밤
4	군마현	시금치, 카키나, 차, 버섯류, 오가피, 두릅
5	이바라키현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차, 버섯류, 죽순, 오가피
6	가나가와현	차
7	미야기현	버섯류, 청나래고사리, 죽순, 오가피, 고비, 메밀, 대두, 쌀, 고사리
8	이와테현	버섯류,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죽순, 메밀, 대두
9	나가노현	버섯류, 오가피
10	사이타마현	버섯류
11	야마나시현	버섯류
12	아오모리현	버섯류
13	시즈오카현	버섯류
14	니가타현	오가피
15	야마가타	버섯류